

2015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(총괄)

□ 제1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10. 27.(화)	심의내용	건축, 교통심의
안 건 명	주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		
신청위치	남구 주안동 77-3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동의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특별풍하중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바람
-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내진설계를 적용 바람
- 대로변에서 상가로의 출입구 설치 검토(권장)

《교통분야》

- 주차램프 앞 보행용 횡프는 차량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도록 위치 재검토
- 차량 출입 차단기 위치 이동 검토 바람
- 대로에서 진입하는 횡프는 삭제 바람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2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10. 2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갈산동 관광호텔 신축공사		
신청위치	부평구 갈산동 181번지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동의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계단참 조정은 조치계획이 허가 시 반영되도록 조치 바람
- 1층 로비공간이 협소하니 추가 공간을 확보 할 것
- 풍하중 산정시 평면이 비정형이므로 정밀 검토 바람
- 예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주출입구 주변으로 허가 시에 지정하도록 검토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3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10. 27.(금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송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		
신청위치	동구 송현동 64-3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재검토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검토·반영하시어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재검토 의견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지하층 평면과 구조도면의 불일치 사항은 수정하고 주차면 배치를 조정
- 기계식주차장 설치 적정성 부족(주차동선의 효율적인 조치계획 미흡)
- 공개공지는 30미터 도로변에 공간 확보 검토
- 주차램프 단부 유효폭 확보 미흡 재검토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4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10. 2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계양구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
신청위치	계양구 서운동 9-13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원안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원안 동의 조건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해당사항 없음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5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10. 27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
신청위치	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동의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유치원 외부 마감재는 따뜻한 느낌의 재료로 검토 할 것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